

예비검사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수검요청일자 + 25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 (전화번호)		

어선용품의 내용

품 명	규 격	형 식	수 량	제조번호	비 고

요청 내역	수검요청일자	년	월	일	수검장소				
	신청구분	[]	제조	[]	개조	[]	수리·정비	[]	수입
	비 고					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용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

첨부서류	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(제조·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,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)	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예비검사대상: 선체·기관·배수 등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3의 어선용품

□ 그 밖의 유의사항

-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의 제조·개조·수리·정비를 시작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.
-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·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.
-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어선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.

처리절차

